Z - 47 - 2022

# 안전작업절차에 관한 지침

202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- 제·개정 경과
  -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 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2년 12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안전작업절차에 관한 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작업/활동이 재해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, 위험요인, 위험성 및 관련 통제조치를 제시하는 안전작업절차서의 작성 방법을 설명함으로서 안전작업절차서가 산업재해 및 공공재해 예방에 기여하여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모든 작업/활동에 사용되는 안전작업절차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3.1 작업 단계: 활동/작업의 단계별 순서
- 3.2 위험성 관리: 위험성관리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.

# 4. 책임

- 4.1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인 사업장내·외 모든 지역에서 안전작업절차가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2 안전보건담당 부서: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안전작업절차 지침의 작성, 유지 및 관련 도구/양식 그리고 안전작업절차 개발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. 또,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안전보건 감사 지침에 따라 안전작업절차의 개발 및 사용을 감사하여야 한다.

Z - 47 - 20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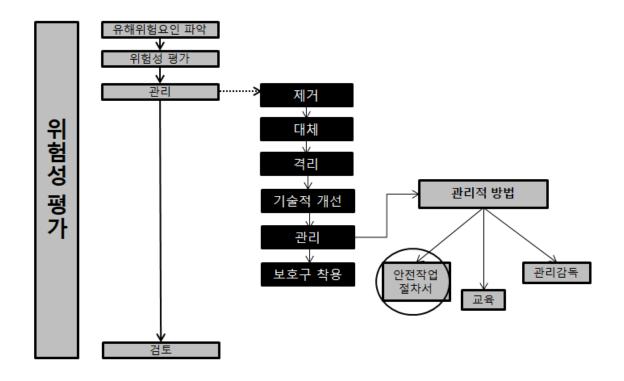
4.3 근로자: 안전보건 위험성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는 담당 작업에서 실행하여야 하는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 5. 안전작업절차서

- 5.1 작업안전분석(JSA), 작업위험분석(JHA), 안전작업방법 기술서(SWMS)와 같은 안 전작업절차는 표준화된 안전작업 수행 방법을 위험성평가에 기반하여 기술한 절차서이다.
- 5.2 안전작업절차서는 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재해 위험성의 감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요인, 위험성평가, 위험관리 방법을 기술한다.
- 5.3 안전작업절차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.
- 5.3.1 작업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
- 5.3.2 안전·환경에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작업의 확인
- 5.3.3 안전·환경 위험성에 대한 기술
- 5.3.4 작업 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관리조치에 대한 기술
- 5.3.5 안전·환경적으로 보장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술
- 5.3.6 준수하여야 할 법령, 기준, 지침 등을 기술
- 5.3.7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, 장비 운용자의 자격, 안전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기술
- 5.4 안전작업절차는 특히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안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5.5 표준 운전절차서와 같은 기타 공통 문서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나,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.

KOSHA GUIDE Z - 47 - 2022

- 5.6 안전작업절차는 위험성평가, 표준운전절차, 안전운전절차가 아니다.
- 5.7 안전작업절차의 실행은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각각에 달려있다. 안전작업절차는 관리적인 대책으로 먼저 다른 유형의 근본적인 대책(예: 제거, 대체, 격리, 기술적 대책)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.



<그림 1> 안전작업절차서 개념

5.8 이러한 절차는 또한 신규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작업/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신규 근로자들이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수행할 작업의 위험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.

# 6. 안전작업절차의 개발

- 6.1 안전작업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개발되어야 한다.
- 6.1.1 사고보고서 및 위험요인 보고서에 있는 시정조치 내용

# Z - 47 - 2022

- 6.1.2 위험성 평가서의 위험관리 조치 내용
- 6.2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.
- 6.2.1 과거에 그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지
- 6.2.2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신규 업무
- 6.2.3 츙전된 전기 설비에서의 작업
- 6.2.4 철거작업
- 6.2.5 석면제거작업
- 6.2.6 지붕에서 작업 시
- 6.3 개발팀 선정
- 6.3.1 작업/활동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개발자와 함께 안전 작업절차서를 개발하여야 한다. 개발팀에 2명 이상이 참여하면 위험요인 및 관리 가 적절하게 식별될 수 있다.
- 6.3.2 안전작업절차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은 프로세스에 익숙하고 위험요인 식별 및 제어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.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. 안전작업절차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은 작업의 복잡성, 작업 개소, 참여 인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.
- 6.3.3 팀 구성원은 근로자, 해당 작업관련 전문가, 관리자, 안전전문가, 안전교육강사,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한다. 가능하면 최소 3명 이상이 안전작업절차서 개발에 참 여하여야 한다. 개발팀 구성원은 안전작업절차서가 실행되는 방법과 왜 필요한지 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해하여야 한다.

# Z - 47 - 2022

- 6.4 개 발 (안전작업절차서는 다음 단계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.)
- 6.4.1 작업/활동을 관찰한다.
  - (1) 개발팀이 작업/활동에 대한 지식/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되고 있는 작업/활동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우선 가장 안전한 방법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.
  - (2) 작업/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. 이용중인 장비보다는 수행중인 작업자의 행동에 집중하여야한다.
- 6.4.2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한다.
  - (1) 일부 작업/활동은 법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다. 안전작업절차서를 개발할 때 법적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법률, 고시, 가이드 등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  - (2) 작업/활동이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작업절차서는 유해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하여야 한다.
- 6.4.3 기본적인 업무순서를 기록한다.
  - (1) 작업/활동관련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/활동의 구성 단계를 기록한다.
  - (2) 개발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.
  - (3)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문서화는 수행중인 작업/활동의 시연 또는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. 이러한 방법이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..
- 6.4.4 단계별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기록한다.
  - (1) 단계별 재해 또는 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한다.
  - (2)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# Z - 47 - 2022

- (가) 관리가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가진 프로세스, 사건, 작업의 목록화
- (나) 단계별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 식별
- (다)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한 모든 원인 식별
- 6.4.5 위험요인 제거 및 관리 방법을 식별한다.
  - (1) 식별된 위험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 또는 관리하는 조치를 열거해야 한다. 단계별 위험관리 방법을 활용하여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다.
- 6.5 안전작업절차서의 시범 운영
- 6.5.1 안전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관찰하고 필요시 절차를 수정한다. 문서화된 안전작업절차서를 시범 운영하여 실제 작업단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.

#### 6.6 승 인

6.6.1 안전작업절차서의 활용 전에 작업/활동을 수행하는 합의된 방법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 승인하는 사람은 해당 작업/활동에 익숙하고 자격이 있어야 한다. 필요에 따라 여러 승인자로 할당될 수 있다.

# 6.7 실 행

- 6.7.1 안전작업절차서가 작성되고 승인되면 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실행되어야 한다.
- 6.7.2 안전작업절차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문서에 "승인"으로 분류한다.
- 6.7.3 안전작업절차서는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, 관련 장소에 비치한다.
- 6.8 모니터 및 검토

# Z - 47 - 2022

- 6.8.1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이 감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안전작업절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시로 검토되어야 한다.
  - (1) 작업/활동의 변화
  - (2) 새로운 위험요인이 식별될 때
  - (3) 작업/활동과 관련한 앗차사고, 재해, 직업병이 발생한 후
  - (4) 법규, 기준, 지침 등의 변경이 있을 때
  - (5) 일정 주기마다(최대 1년)
- 6.9 접근성 및 열람
- 6.9.1 안전작업절차서는 사용되는 공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6.9.2 안전작업절차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저장되거나 하드 카피로 보관될 경우 개정될 때의 개정안으로 최신화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